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 박세채 의원 외 13명

### 2. 제안이유

-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
  - 출석정지 징계 :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 감액
    - \* 징계 사유가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 3개월간 지급 ×
  -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1/2 감액 지급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 기준 예시(국회법 제 163조와 동일)에 준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개정 현황과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할 것이나, 개정안 제5조제3항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은 기초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5.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 제재 현황 :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징계기준

| 구분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
| 겸직·영리금지 위반 | 출석정지 90일 이내<br>▶ 의정비 1/2제한                 | 출석정지 30일 이내<br>▶ 의정비 제한 X |
|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의정비 제한<br>▶ 출석정지 3개월분<br>▶ 공개회의 경고·사과 1개월분 | 의정비 제한 X                  |

- 제명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사이 중간단계 징계 수단 미흡
- 구속 시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지급

- 제도개선 권고 사항 (지방의회 2023년 12월까지)
  -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지방의회)
  -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지방의회)
  -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행정안전부)
  -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행정안전부)
-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예시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징계종류          |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
|---------------|------------------------------------------|
|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               | 질서유지 의무 위반 :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 공개회의<br>경고·사과 |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비 1/2 감액                |

○ 타 시·군 개정 현황 (1개 : 서울 강동구의회)

-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